

I. 집행 개요

A. 목적

본 규정은 2019년 6월 14일(84 FR 27846) 연방 관보가 주요 개정 및 부수적 개정을 거쳐 발표한 보건 및 보건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의 차별 금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규칙을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ACA, 42 U.S.C. 18116의 1557절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존 규정¹(“2016 규칙”)을 변경한 규정입니다. 또한 1972년 교육 개정안의 제9편(“9편”)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개정하며, 다양한 CMS 규정의 차별금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개정합니다.

ACA의 1557절을 통해 의회는 오래된 특정 민권 차별금지 요건을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적용하고, ACA 1편에 따라 행정 기관이나 동일한 1편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도 적용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차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를 상호 참조하여 적용한

¹ 45 CFR 파트 92에서 81 FR 31375-473(2016년 5월 18일)을 성문화함

것입니다. 의회는 준법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 따라 부여되거나 집행 가능한 집행 체계"는 1557절의 "위반 사항에 적용된다"고 지시했습니다.²

이 최종 규칙은 오랜 법규 및 보건복지부의 실행 규정을 위해 제공되고 집행 가능한 집행 체계로 복귀합니다. 이 규칙은 의회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2016 규칙의 여러 규정을 삭제하고, 과도한 규제 부담(5년 동안)에서 약 29억 달러를 면제해주고, 실질적인 준법을 촉진하며, 혼란을 줄이고, 1557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64년 민권법 6편("6편"), 9편, 1975년 연령 차별법("연령법"), 1973년 재활법 504조("504조") 등이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하여 보건복지부가 민권법 집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³

보건복지부가 2016년 규칙의 해당 부분이 중복되거나 혼동된다고 판단하고, 예기치 않은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예상되는 장점보다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여 본 최종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두 곳의 연방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본 규정의 일부를 공표함에 있어서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으며, 한 곳의 연방 법원은 2016 규칙의 해당

² 42 U.S.C. 18116.

³ 1557절에는 7편과 관련하여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ACA 1편의 어떠한 내용도 민권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 구제, 절차 또는 법적 기준을 무효화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7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42 U.S.C. 18116(b).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연방규정집에서 무효화한 조항을 삭제한 것을 포함하여 2016 규칙의 상당 부분을 폐지함으로써 보건복지부는 민권법 법령의 기본 의미와 해당 법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에 부합하는 오래된 법적 해석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016 규칙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을 처음 5년 동안 9억 4200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81 FR 31458–59.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최근 예측에 따르면 이 금액은 실제 비용보다 크게 저평가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전자 송달을 고려했을 때, 2016 규칙의 요건에서 모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통지 및 핵심 구절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은 연간 평균 5억 8500만 달러, 5년 동안 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규제 대상 기관의 부담을 재검토하고 일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규제 대상 기관과 기타 당사자에게 그러한 요건을 부과했을 때 일반에게 돌아가는 잠정적 혜택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B. 주요 조항의 요약

1) 1557절 규정에 대한 변경사항

a.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광범위한 조항 삭제

본 최종 규칙은 1557절에서 의회가 위임한 권한을 초과하는 2016 규칙의 특정 조항을 삭제합니다. 2016 규칙에서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의 정의에는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이 포함됩니다("남성, 여성 또는 어느 쪽도 아님, 기타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개인의 성별에 대한 자각"). 이 정의와 관련하여 2016 규칙은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의학적 치료와 보장에 대해 몇 가지 요건을 부과했습니다. 이 정의에는 9편의 20 U.S.C. 1688[댄포스 개정안(Danforth Amendment)이라고도 함]의 명시적인 낙태 관련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임신 중절"을 이유로 한 차별도 포함되었으며, 부인과학 서비스 또는 기타 단일 성별 의료 서비스 제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입증 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가 변경 권한을 가지지 않은 조항에 대한 변경입니다. 9편은 1557절의 "성별을 근거로 한" 차별 조항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변경사항은 9편의 조항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9편의 신속 면책과 충돌하는 규제 대상 기관에게 추가적인 법적 요건을 부과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조항들은 이미 법원이 무효화하고 환송했습니다. 본 최종 규칙은 성 정체성과 임신 중절에 관한 무효화된 표현은 생략되어 있으며, 연방규정집의 조항이 기본 법규를 준수하고 법원의 명령의 발효에 따라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변경 조치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적인 고려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 규칙의 성 차별에 관한 조항은 의회가 규정한 적이 없는 성 정체성 및 임신 중절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요건을 부과했으며, 규제 대상 기관이 성별을 근거로 타당한 구분 및/또는 의학적으로 명시된 구분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조항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혼동되거나 모순되는 요구를 했으며, 서비스 제공자의 의학적 판단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이들의 분별력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최종 규칙에 의거하여 각각의 주에서는 해당 연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순수한 법적 의미에 따라 해석) 의학적 판단 및 성 정체성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을 공정하게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b. 규제 대상 기관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

보건복지부의 법적 권한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으로서 본 최종 규칙은 1557절에 포함된 2016 규칙의 기관에 대한 정의가 해당 법률의 조항에 더 가깝도록 조율하기 위해 규제 대상 기관에 대한 정의를 개정합니다.

c. 민권 행사에 관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의 삭제

본 최종 규칙은 또한 2016 규칙의 조항 중에서 기존의 민권법 및 규정과 중복되며, 기존의 법률 및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중복되어 개인의 권리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혼동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본 최종 규칙은 1557절에 포함된 연방 민권법의 해당 조항 의미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및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률의 집행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집행 체계를 통해 이러한 금지 조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 규칙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차별 사례 목록은 물론,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 성별, 건강보험 보장범위, 특정한 직원 건강 혜택 프로그램, 민권법에 따른 수혜자의 권리에 대한 통지, 책임자 지명 및 고충제기 절차의 도입, 규제 대상 기관의 준법 이력 심사를 위해 OCR에 부여된 접근 권한, 협박 및 보복 금지, 집행 절차, 사적 소권, 구제 조치, 자발적 조치 등을 근거로 한 상이한 영향 등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본 최종 규칙은 1557절의 보건 부문에 적용되는 각각의 기본 민권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관련 규정 및 관련 판례법을 따릅니다. 본 규칙은 2016 규칙처럼 1557절의 규제 대상 기관에게만 적용되는 새로운 미봉책과 같은 규정 체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d. 불필요한 규정적 부담 제거

본 최종 규칙은 민권법 준수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 대상 기관에게 규정적 부담을 주는 2016 규칙의 조항을 개정합니다. 특히 모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통지 및 핵심 구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제 대상 기관의 과도한 요건을 제거하고, 건강보험의 제공이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제한적 영어 능력(LEP) 구사자의 이용 요건이 장기적인 DOJ 및 HHS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원격 영어 통역 서비스를 비디오 기반이 아닌 오디오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최종 규칙은 민권 준수 목적에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해당 목적의 달성을 촉구하는 2016 규칙의 다양한 기타 조항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규제 대상 기관이 준법에 대한 보장을 하고, 2016 규정의 대부분의 조항에서 LEP 구사자 및 장애인의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의무가 포함됩니다.

e. 기타 설명 및 개정 사항

본 최종 규칙은 2016 규칙과 다른 법률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개정하여 해당 법규의 조항 및 기타 해당 민권법 및 양심 법령을 준수하여 1557절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 문구에 대한 기타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2) 기타 규정과 관련된 개정안 및 준수 개정안

a. 9편

보건복지부가 20 U.S.C. 1688의 낙태 관련 중립적 표현(이하 “낙태 관련 중립적 표현”이라 칭함)과 *Franciscan* 법원이 2016 규칙의 일부를 무효화했을 때 법원 논리의 일부를 형성하는 9편 종교적 면책을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최종 규칙은 보건복지부의 9편 규정이 낙태 관련 중립적 표현과 종교적 면책을 포함한 9편의 합법적인 면책을 명시적으로 통합하도록 개정합니다.

b. CMS

1557절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게 해당하는 CMS 규정의 10개 조항은 최근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원인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1557절에 따라 통합된 민권법에서 본 최종 규칙이 "성별을 근거로"라는 표현의 원래 의미로 돌아가는 것과 해당 프로그램에 1557절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민권 행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최종 결정합니다.

C. 주요 조항의 비용 및 혜택에 대한 요약

본 최종 규칙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본 최종 규칙으로 인해 최종 결정 후 처음 5년 동안 약 29억 달러의 비용 절감(할인 비적용)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감액의 상당 부분은 2016 규칙의 의무적 고지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OCR이 언어 사용 계획의 존재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요건을 제거하여 추가적인 비용 절감이 발생하고, 고충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기존의 규정 요건과 중복되는 조항을 폐지하여 비용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관이 정책 및 절차에 대해 교육하고 검토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방법규의 준수, 연방법원 및 의회의 역할에 대한 적합성,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하거나, 혼동되는 조항의 축소 또는 제거 등과 같이 예상되는 혜택들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부담을 훨씬 능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항	비용 절감 및 혜택	비용
제 1557절: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미 무효화된 조항을 삭제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연방규정집이 규정됩니다. 기타 조항을 삭제할 경우	이미 무효화된 조항에 대한 예상 비용은 없으며 관련 조항에 대해 발생 가능한

조항	비용 절감 및 혜택	비용
과도하게 광범위한 조항 삭제	보건복지부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 규정을 국한시킴으로써 법적 규칙이 회복되며, 국가가 결정 권한을 가지게 하여 연방주의가 회복되고, 서비스 제공자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부당한 부담을 제거하게 됩니다.	비용은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제 1557절: 규제 대상 기관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	이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해당 법규를 최대한 원래 의미대로 해석함으로써 법률 규칙이 개선됩니다.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제 1557절: 민권 행사에 관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의 삭제	이러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보건복지부의 민권 규정에 대한 중복, 불일치, 혼동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해당 기관과 개인이 각각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및 절차를 개정함으로써 첫 번째 해에 2억 758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해당 직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다음에 열거될 조항도 포함됩니다.)
제 1557절: 불필요한 규정적 부담 제거	이러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부당하거나, 과도한 부담, 또는 환자에 대한 과도하고 혼동되는 서면 통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욱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처음 5년 동안 연간 5억 85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내용 참조.
제 1557절: 기타 설명 및 개정 사항	이러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해당 규정은 양심 및 기타 민권을 합법적으로	예상 비용은 없으며 발생 가능한 비용은 제공된

조항	비용 절감 및 혜택	비용
	보호하고, 위에 열거한 기타 규제 변경의 목적에 기여하여 법률 규칙을 개선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9편 규정, 관련 개정안	이번 개정으로 9편의 규정이 해당 법규의 낙태 관련 중립적 표현 및 종교적 면책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법률 규칙을 확보합니다.	예상 비용은 없으며 발생 가능한 비용은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CMS 규정, 준수 개정안	이러한 개정안은 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준수하여 법률 규칙을 회복하고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민권 행사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제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이 불가능합니다.